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교육·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감독 한다.

③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장
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
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 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공간정보진흥과장, 토지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항공정책

과장

2. 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③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

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

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

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

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체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경고문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후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 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관리기

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

제19조(보안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점검·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 3.30限(해당 연도 계획)
2. 실시결과 : 12.30限(해당 연도 결과)

제21조(보안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2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하“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보안관리규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 및 이 보안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이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보안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항공 사진	비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 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

공정정보	등급	분류 기준
위성영상	비공개	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p>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 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별표 2>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조와 같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시행책임

-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 전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후 반출명령을 받아 보안관리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안관리 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은 각 부서 해당공간보 취급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반출을 명한후 소속직원을 비상소집한다.

(2)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수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반출조는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반출한후 이를 비상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반출조원이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가. 반출장소

-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나.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최종확인 및 보고

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여부를 확인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 일자	제 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공간정보자료 복제 · 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 유	열람 · 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 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